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80

발의연월일: 2021. 4. 14.

발 의 자:이철규·김선교·정운천

최형두 · 윤창현 · 권명호

구자근 • 배준영 • 권성동

서정숙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병적에서의 제적사유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병역에 복무할 수 없어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"6년 이상의 징역 또는"을 "사형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병역의무) ① ~ ③ (생	제3조(병역의무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④ 병역의무자로서 <u>6년 이상의</u>	④사형 또는
징역 또는 금고의 형(刑)을 선	<u>6년 이상의 징역이나</u>
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	
수 없으며 병적(兵籍)에서 제적	
된다.	